

교육혁신센터규정

[규정명 변경: 2025.6.19.]

2022.02.07.제정 2022.04.01.일부개정 2022.10.25.일부개정 2023.09.01.일부개정
2025.06.19.일부개정

<교육혁신센터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과정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동명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육에 관한 종합적 발전계획 및 대학교육의 혁신방안을 교육과정 개발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대학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교육성과 달성을 모색하기 위해 **교육혁신센터**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두고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5.6.19.)

제2조(기능) 센터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(개정 2025.6.19.)

1. 대학교육 기본정책 수립
2. 대학교육 혁신 방안 연구 및 기획
3. 대학교육과정 편성 지침 수립
4. 대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평가, 개선 및 환류
5.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계 개발, 운영, 평가 및 환류
6. **대학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 및 기획**
7. 비교과 교육과정 정책 수립, 관리, 평가, 개선 및 환류
8. 기타 위 호에 부수되는 업무

제3조(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**교육혁신센터위원회**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22.10.25.,2025.6.19.)

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, **교육혁신원장**, **교육혁신센터장**, 학부교양대학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학사관리팀장, **미래전략팀장**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2명의 범위내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3.9.1.,2025.6.19.)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25.6.19.)

1. 대학교육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대학교육 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
3. 대학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관한 사항
4. 대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평가,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
5.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계 개발, 운영,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
6. 대학교육 모델의 시행 및 확산에 관한 사항

7. 위원장이 부의를 요청하는 사항

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세부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분과별 연구회(교육정책·혁신 연구회, 전공교육과정 연구회, 교육질관리 연구회, 교육모델연구회)를 둘 수 있으며, 연구회 구성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25.6.19.)

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⑦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⑩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한다.

제4조(세칙)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